

## 법무부 전주보호관찰소 청년인턴 채용 재공고

전주보호관찰소 공고 제2024-09호

전주보호관찰소에서 근무할 청년인턴 채용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4월 29일

법무부 전주보호관찰소장

### 1. 선발예정인원 (1개 분야, 총 1명)

지원코드	채용 분야	선발인원	근무예정부서(근무지)
인턴01	행정·법무	1명	전주보호관찰소(전북)

#### 가. 근무조건

- (신 분) 공무원의 사무를 보조하는 공무원이 아닌 근로자
- (계약기간) 2024. 6. ~ 2024. 11. (6개월)
- (보 수) 시급 9,860원 (시간외 근무수당 별도 지급), 월 2,060,740원
- (근무시간) 주 5일, 8시간 (일별 09:00~18:00, 휴게시간 12:00~13:00)
- (후생복지)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국민연금 가입

#### 나. 주요 업무 내용

지원코드	채용 분야	담당 업무
인턴01	행정·법무	<ul style="list-style-type: none"><li>보호관찰 업무 전반과 관련한 업무지원</li><li>수강명령·사회봉사 집행 보조</li><li>각종 보고서 자료 취합 정리</li><li>기타 회의·행사 준비 및 행정업무 지원</li></ul>

## 2. 응시 자격 및 우대요건

### 가. 응시자격 요건

① 대한민국 국적 소지자

② 최종시험(면접시험) 예정일('24. 5. 22.) 기준 「청년기본법」상 청년(만 19세~만 34세)의 연령에 해당하는 사람

※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같은 법 제2조에 의한 제대군인 및 「병역법」 제 26조 제1항 제1호의 업무에 복무하고 소집 해제된 공익근무요원이 응시할 경우 상한 연령을 다음과 같이 연장함

▶ 군복무기간 1년미만: 1세 / 1년이상~2년 미만: 2세 / 2년이상: 3세 연장

③ 국가공무원법 제33조의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사람

#### 결 격 사 유 (국가공무원법 제33조)

1. 피성년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 6의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6의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 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규정된 죄
  - 다.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스톱킹범죄
- 6의4.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 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④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 제11조제1항의 가족 채용 제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

<b>가족 채용을 제한받는 공직자의 범위</b>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 제11조 제1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소속 고위공직자 / 채용업무를 담당하는 공직자</li> <li>○ 해당 산하 공공기관의 감독기관인 공공기관 소속 고위공직자</li> <li>○ 해당 자회사의 모회사인 공공기관 소속 고위공직자</li> </ul>

⑤ 「공무원 채용 신체검사 규정」의 불합격 판정기준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

나. 우대요건

지원코드	채용 분야	우대요건
인턴01	행정·법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4년제 대학 행정·법학·통계학 관련학과 재학생(휴학생 포함) 및 졸업자</li> <li>○ 컴퓨터활용능력 2급 이상 소지자 또는 워드프로세서 1급 소지자</li> <li>○ 「장애인고용 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제 3조에 따른 장애인에 해당하는 자</li> </ul>
<b>【공 통】</b>		
<p><b>&lt;우대요건 안내&gt;</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원서접수 마감일 기준으로 서류전형 단계에서만 적용</li> <li>○ 4년제 대학 행정·법학·통계학 관련학과 재학증명서 또는 졸업증명서 제출</li> <li>○ 컴퓨터활용능력 2급 이상, 워드프로세서 1급 이상 자격증 사본 제출</li> <li>○ 장애인의 경우 장애인증명서 제출</li> </ul>		

### 3. 시험 방법

#### 가. 서류전형

- 응시자격요건에 적합한지 여부를 서류전형위원회에서 서면으로 심사하여 적격 또는 부적격을 판단
- 단, 응시인원이 임용예정 직위별로 선발예정인원의 3배수 이상인 때에는 서류전형 기준\*에 따라 선발예정인원의 3배수로 합격자 결정
  - \* 서류전형 기준 : 1. 자기소개서 2. 우대요건
-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 2024. 5. 10.(금) 예정
  - 법무부 홈페이지(<https://www.moj.go.kr>)에 2차 면접일정 등 게재함

#### 나. 면접시험

- 서류전형 합격자를 대상으로 당해 직무수행에 필요한 능력 및 적격성 검증
- 불합격기준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 중에서 평정 성적이 우수한 자 순으로 합격자 결정
- 면접 방식 : 개별면접
  - ※ 면접시간 및 장소 등은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시 공고 예정

### 4. 시험 일정

- 시험공고 : 2024. 4. 29.(월) ~ 5. 8.(수)
- 원서접수 : 2024. 5. 1.(수) ~ 5. 8.(수)
-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및 면접시험 장소 공고일 : 2024. 5. 10.(금)
- 서류전형 합격자 증빙서류 제출 : 2024. 5. 13.(월) ~ 5. 16.(목)
- 면접시험일 : 2024. 5. 22.(수)
  - ※ 면접시간 및 장소 등은 서류전형 합격자 공고시 발표 및 서류전형 합격자 대상 별도 개별 통보 예정
- 최종 합격자 발표일 : 2024. 5. 27.(월)

- ※ 서류전형 합격자 명단 및 최종면접 합격자 명단은 법무부 홈페이지(www.moj.go.kr)에 공고하니, 응시자는 시험일정을 반드시 법무부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시기 바람
- ※ 상기 일정은 응시인원, 시험장 사정, 서류검증 소요기간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 근로계약 체결 전 최종합격자가 포기, 최초 채용일로부터 3개월 이내 결원 발생하는 등의 사유 발생 시, 면접시험 평정 성적 우수자 순으로 추가 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음

## 5. 응시원서 접수 및 제출서류 안내

### 가. 접수일시 및 방법

- 접수기간 : 2024. 5. 1.(수) ~ 2024. 5. 8.(수) 18:00
- 접수방법 : 관련서류는 직접제출 또는 등기우편이나 **e-mail**로 접수(확인메일 또는 문자 발송 예정)
  - 등기우편 접수처 : 우편번호 54903, 전북 전주시 덕진구 동부대로 859, 전주보호관찰소 2층 행정지원과
  - ※ **우편접수의 경우 접수마감일 18:00까지 소인분에 한하며**, 응시번호는 휴대전화 SNS 또는 유선 등으로 통보하고 응시표는 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해 면접시험 당일 교부 예정
  - ※ 우편 및 대리 접수도 가능하나, 응시원서 등 서류미비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 본인에게 있으므로 제출서류가 누락되지 않도록 유의
  - e-mail : nana21@korea.kr
  - ※ e-mail 제목은 반드시 "성명(지원분야)[예 : 홍길동(행정.법무)]으로 기재

### 나. 제출 서류

- 청년인턴 채용시험 응시자 제출서류 목록 1부(필수 제출)
- 응시원서 및 자기소개서 각 1부(필수 제출)
-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필수 제출)
  - ※ 필수 제출서류는 법무부 홈페이지(www.moj.go.kr) 또는 인사혁신처 나라일터 홈페이지(<http://gojobs.mopas.go.kr>)에 게시된 채용 공고문의 별지 서식을 내려받아 작성·제출
- 기타 서류전형 참고서류(필요시 제출)
  - ※ 지원분야 관련 경력이나 활동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 제출

- 서류전형 우대요건 증빙서류(해당자에 한함) : 서류전형 합격자

### <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후 제출하는 증빙서류 >

각종 증빙서류는 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하여 제출하며, 제출방법 등에 대하여는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시 별도로 안내합니다.

- 가족 채용 제한 여부 확인서(필수 제출, 별지서식 제5호 참조)
- 결격사유 검증 체크리스트(필수 제출, 별지서식 제6호 참조)
- 주민등록초본(병적사항포함, 필수 제출)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따른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 증빙서류(해당자에 한함)
- 전기통신·정보처리분야 또는 사무관리분야 자격증 사본(해당자에 한함)
- 장애인등록증 사본 또는 장애인증명서(해당자에 한함)

## 6. 유의 사항

- 동일한 날짜에 공고하는 각 기관의 청년인턴 채용시험에 중복지원 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니, 1개 기관을 선택하여 지원하시기 바랍니다.
- 응시자는 자격요건과 담당예정업무 등이 적합한가를 우선 판단하여 원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 응시원서 상의 기재 착오 또는 누락이나 연락불능, 합격자발표 미확인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의 귀책사유가 될 수 있으므로, 합격자 발표일 등 시험일정과 안내사항, 합격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 채용서류의 거짓작성, 청탁 등으로 시험의 공정성을 심각하게 훼손한 경우에는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6조,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5장,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장, 형법 등 관련 규정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 응시원서나 각종 증명서의 기재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시험을 정지 또는 무효로 하며, 계약체결 후에라도 제출된 서류에 기재된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근로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 본 시험계획은 불가피한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된 사항은 해당 시험일 7일 전까지 최초 공고매체에 공고할 예정입니다.
- 응시자가 선발인원과 같거나 적을 경우에는 재공고할 수 있습니다.
- 해당 업무를 수행하는데 적격자가 없는 경우 전형을 거쳐 채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청년인턴으로 선발되더라도 추후 정규 공무원으로 임용하거나 임용시험 시 가산점 등의 혜택은 없습니다.
- 청년인턴으로 선발되더라도 추후 정규 공무원으로 임용하거나 임용시험 시 가산점 등의 혜택은 없습니다.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전주보호관찰소 행정지원과로(☎063-249-2356)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채용서류는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라 응시자가 최종합격자 발표일 이후 14일부터 30일간 서면으로 채용서류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반환 청구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해당 채용서류를 반환(최종 채용합격자, 홈페이지 또는 전자우편으로 제출된 경우나 구인자의 요구 없이 자발적으로 제출한 경우는 제외)하게 됩니다. 단, 반환청구되지 않은 서류는 상기 청구기한까지 보관 후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파기됩니다.  
(청구 방법: 담당자 이메일 nana21@korea.kr로 채용서류 반환청구서[별지 서식 제7호]를 제출)

<별지서식 제1호>

## 청년인턴 채용시험 응시자 제출서류 목록

응시번호	지원코드	채용분야	성명	연락처
* 접수담당기재				* 핸드폰 번호

제출란에 ✓표시 후 아래 순서대로 제출

연번	서류명	비고	제출
1	응시원서 1부	별지2호 서식	
2	자기소개서 1부	별지3호 서식	
3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별지4호 서식 (동의시 ✓표시 필수)	
4	서류전형 우대요건 증빙서류	해당자에 한함	

불입의 기재사항은 사실과 다름없음을 확인합니다.

2024년 월 일

작성자(응시자) :

(인/서명)





## 응시원서 작성요령

1. 응시원서 작성시 응시자 부주의로 인한 잘못된 기재나 표기는 응시자 본인의 불이익이 될 수 있습니다.
2. 『응시원서』는 아래의《작성요령》에 따라 작성하여야 합니다.

### 《 작 성 요 령 》

- ① **응시코드** : 응시자가 작성하지 않습니다
- ② **지원코드 및 채용분야** : 공고문을 참고하여 응시하고자하는 지원코드와 채용분야 기재  
(예) 지원코드 : 인턴01      채용분야 : 행정·법무(보호관찰 업무지원)
- ③ **성명, 생년월일, 성별** : 해당란에 정확하게 기재  
(예) 생년월일 : 2001.10.15.      성별 : 여
- ④ **주소** : 현재 거주하는 곳(우편물 수령 등)을 정확히 기재함
- ⑤ **전자우편·(휴대)전화** : 빠짐없이 정확하게 기재함
- ⑥ **우대요건** : 취업지원대상자, 국가유공자, 저소득층 등은 해당란에 ✓ 표시, 기타 지원분야 활동경력 등 참고사항은 표에 내용 작성

# 자기소개서

응시번호		지원코드	인턴01	채용분야	행정·법무 (보호관찰 업무지원)
성명		생년월일		성별	

◎ 자기소개서

(유의사항) 작성 시 학교명, 출생지, 부모직업 등 개인 신상을 직·간접적으로 파악할 수 있도록 기재할 경우 불이익(감점)을 받을 수 있습니다.

※ A4용지 2매 이내로 작성

※ 기재사항이 많을 경우 글자크기, 장평 등을 조절하여 2장 이내로 작성

◎ 자기소개서

<별지서식 제4호>

# 개인정보 수집 · 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 1.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본 기관에서는 근로자 채용 및 관리를 위해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 제17조 등 관계 법령에 따라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 및 이용하고자 합니다.

- (1)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목적 : 근로자 채용 및 관리
- (2) 개인정보 수집 항목(필수) : 성명, 생년월일, 휴대폰번호, 이메일, 주소, 응시자격요건에 따른 학력·경력·자격·등 우대요건에 해당하는 사항

(3)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기간 : **최종합격자 발표일로부터 5년**

**개인정보 활용 목적 달성 이후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보유 후 파기**

☞ 개인정보의 수집·이용과 관련하여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다만 동의거부 시 근로자 채용 및 임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위와 같이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동의하십니까?     동의함     동의하지 않음

## 2. 자격요건 확인 등을 위한 동의서 효력인정 및 개인정보 제3자 제공 동의서

시험실시기관은 응시요건 등 응시자가 제출한 증빙자료의 진위 여부를 해당기관에 조회하여 확인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관련자료 확인서 발급에 동의하며, 개인정보보호법 등에 보호되고 있는 각종 개인정보 자료를 동법 제15조 등에 따라 인사담당 업무관계자에게 제공 및 공개·활용하는데 동의를 받고 있습니다.

또한 이 시험에서 부정행위를 한 사람은 시험을 정지 또는 무효로 하거나 합격을 취소합니다.

(1)제공받는 자	(2) 제공목적	(3) 제공 항목	(4) 제공받는 자의 보유·이용기간
개인정보(자격·우대요건 등 관련) 확인기관	근로자 채용 관리 (자격확인)	우대요건 충족 및 제출서류 진위여부 확인에 필요한 사항	정보처리 목적 달성 시까지 (개인정보 활용 목적 달성 이후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보유 후 파기)

☞ 개인정보 제공과 관련하여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다만 동의거부 시 채용 및 임용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본인이 서명·날인한 동의서의 복사본은 자료의 진위 검증을 위해서 원본과 동일하게 유효함을 인정하고, 이에 동의하십니까?     동의함     동의하지 않음

위와 같이 확인서 발급에 동의하십니까?     동의함     동의하지 않음

위와 같이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는데 동의하십니까?     동의함     동의하지 않음

2024년    월    일  
성명 :    (서명)

전주보호관찰소장 귀하

<별지서식 제5호>

■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지침 [별지 제9호 서식]

### 가족 채용 제한 여부 확인서

• 해당하는 [ ]에 √ 표시를 합니다.

채용기관	기관명	채용방법	채용직위(직급)
	채용사유		

채용대상자 (확인인)	성명	주소	
	연락처	생년월일	채용 예정일

#### 가족 채용 제한 확인사항

① 가족채용	채용대상자의 가족 중 채용기관 소속 고위공직자 또는 채용업무를 담당하는 공직자가 있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채용대상자의 가족 중 채용기관이 산하 공공기관인 경우 그 기관의 감독기관(자회사인 경우 모회사) 소속의 고위공직자가 있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② 예외 해당 여부	①에서 “예”에 답변한 경우, 다른 법률에서 이 법의 적용을 받는 공공기관이 제11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직자의 가족을 채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는 경우인가?	[ ] 예 [ ] 아니오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11조에 따른 가족 채용 제한에 대하여 위와 같이 확인합니다. 만약 위 사항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어떠한 처벌이나 불이익도 감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채용대상자(확인인)

(서명 또는 인)

#### 유의사항

① “가족채용”의 가족은 「민법」 제779조에 따라 다음의 호를 가족으로 한다.

1. 배우자, 직계혈족 및 형제자매 2. 생계를 같이하는 직계혈족의 배우자, 배우자의 직계혈족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 결격사유 검증을 위한 체크리스트

성명	생년월일

목 록	해당여부
① 피성년후견인	<input type="checkbox"/> 해당 <input type="checkbox"/> 해당없음
②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input type="checkbox"/> 해당 <input type="checkbox"/> 해당없음
③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input type="checkbox"/> 해당 <input type="checkbox"/> 해당없음
④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input type="checkbox"/> 해당 <input type="checkbox"/> 해당없음
⑤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input type="checkbox"/> 해당 <input type="checkbox"/> 해당없음
⑥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input type="checkbox"/> 해당 <input type="checkbox"/> 해당없음
⑦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input type="checkbox"/> 해당 <input type="checkbox"/> 해당없음
⑧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규정된 죄 다.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스톱킹범죄	<input type="checkbox"/> 해당 <input type="checkbox"/> 해당없음
⑨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input type="checkbox"/> 해당 <input type="checkbox"/> 해당없음
⑩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input type="checkbox"/> 해당 <input type="checkbox"/> 해당없음
⑪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input type="checkbox"/> 해당 <input type="checkbox"/> 해당없음

응시자 본인은 위 사실이 틀림 없음을 확인합니다.

2024. . .

성명 : (서명)

전주보호관찰소장 귀하

## <별지서식 제7호>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지 제3호서식]

# 채용서류 반환청구서

접수번호	접수일자	
청구인	성명	수험번호
주소	※ 서류 반환을 원하는 경우에만 작성 제출	
반환장소 (주소와 다른 경우 기재)		
반환청구서류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및 제4조에 따라 위와 같이 채용 서류의 반환을 청구합니다.

2024년 월 일

청구인 (서명 또는 인)

전주보호관찰소장 귀하

### 공지사항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1항에 따라 신청인이 채용서류의 반환을 요청하면 해당 사업장은 14일 이내에 반환요구서류를 발송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2항에 따라 반환요구서류는 특수취급우편물을 통해서 전달받거나, 사업장에서부터 직접 전달받을 수 있습니다.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제2항에 따라 채용서류의 반환에 드는 비용을 청구인이 부담할 수 있습니다.

○ 제출된 서류는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제11조에 따라 응시자가 최종 합격자 발표일의 다음날부터 14일까지 채용서류의 반환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반환(최종 채용 합격자 제외)됩니다.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